

改正漁港法 全文

現 行	改 正
第1章 總 則	
<p>第1條(目的) 이 법은 漁港의 指定과 施設 및 管理에 관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漁港의 開發을 促進하고 그 利用과 管理의 適正을 圖謀하여 水産業發展에 寄與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p> <p>第2條(定義) ① 이 법에서 “漁港”이라 함은 天然 또는 人工의 漁業根據地가 되는 水域 및 陸域과 漁港施設로서 第4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指定된 것을 말한다. (新 設)</p> <p>② 이 법에서 “漁港施設”이라 함은 漁港區域안에 있는 다음의 各 施設을 말한다.</p> <p>1. 基本施設</p> <p>가. 外廓施設: 防波堤·防砂堤·波除堤·防潮堤·導水堤·水門·閘門·護岸·堤防·突堤 및 胸壁</p> <p>나. 繫留施設: 岸壁·物揚場·繫船浮標·繫船杭·棧橋·浮棧橋·船着場 및 船揚場</p> <p>다. 水域施設: 航路 및 泊地</p> <p>2. 機能施設</p> <p>가. 輸送施設: 鐵道·道路 및 橋梁</p> <p>나. 航行補助施設: 航路標識·信號施設 및 照明施設</p> <p>다. 漁港施設用地: 漁港施設의 敷地</p> <p>라. 漁船漁具 保全施設: 漁船修理場·漁船機艙修理場 및 漁具乾燥場</p> <p>마. 補給施設: 給水 및 給油施設</p> <p>(新 設)</p> <p>바. 水產物處理加工施設: 荷役機械·野積場·製水·冷凍·冷藏施設·加工工場·販賣場 및 水產物倉庫</p> <p>사. 漁業用 通信施設: 陸上無線電話 및 漁業氣象信號施設</p> <p>(新 設)</p> <p>(新 設)</p> <p>(新 設)</p> <p>아. 船員厚生施設: 宿泊所·浴場·診療所 및 船員休憩所</p> <p>(新 設)</p> <p>(新 設)</p>	<p>第1條(目的) 이 법은 漁港의 지정·開發 및 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漁港의 開發을 促進하고 그 관리와 利用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水産業의 振興과 漁村地域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p> <p>第2條(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p> <p>1. “漁港”이라 함은 天然 또는 人工의 漁業根據地가 되는 漁港區域과 漁港施設로서 第6條의 規定에 依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p> <p>2. “漁港區域”이라 함은 漁港의 水域 및 陸域(大統領令이 정하는 進入道路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p> <p>3. “漁港施設”이라 함은 漁港區域안에 있는 다음의 施設을 말한다.</p> <p>가. 基本施設</p> <p>(1) 防波堤·防砂堤·波除堤·防潮堤·導水堤·水門·閘門·護岸·堤防·突堤·胸壁等 外廓施設</p> <p>(2) 岸壁·物揚場·繫船浮標·繫船杭·棧橋·浮棧橋·船着場·船揚場等 繫留施設</p> <p>(3) 航路·泊地等 水域施設</p> <p>나. 機能施設</p> <p>(1) 鐵道·道路·橋梁·停車場·해리포트等 輸送施設</p> <p>(2) 航路標識·信號·照明施設等 航行補助施設</p> <p>(削 除)</p> <p>(3) 漁船修理場·漁具乾燥場·漁具製作場等 漁船漁具保全施設</p> <p>(4) 給水·給水·給油施設, 電氣收容設備·船需品補給場等 補給施設</p> <p>(5) 活魚一時保管簡易施設</p> <p>(6) 荷役機械·製水·冷凍·冷藏施設, 加工工場·販賣場·野積場等 水產物處理加工施設</p> <p>(7) 陸上無線電信·電話施設, 漁業氣象信號施設等 漁業用 通信施設</p> <p>(8) 管理·觀測施設, 管理船舶의 保管 및 接岸施設, 機資材倉庫等 漁港管理施設</p> <p>(9) 環境汚染防止를 위한 導水施設, 廢油·廢船處理施設等 漁港淨化施設</p> <p>다. 福祉施設</p> <p>(1) 診療施設·宿泊施設·沐浴施設·休憩施設等 漁民厚生施設</p> <p>(2) 낚시터·遊漁船·모터보트등의 收容을 위한 레저用 基盤施設</p> <p>(3) 廣場·造景施設等 漁港의 環境整備를 위한 施設</p>

現 行	改 正
<p>③이 법에서 “漁港修築事業”이라 함은 第8條의 規定에 依한 漁港의 調査와 基本計劃 및 整備計劃에 依하여 行하는 漁港施設의 新築·增築·改築·補修·除去 또는 漁港區域안의 土地의 崩壞나 土砂의 流入등을 防止하는 事業을 말한다.</p> <p>第5條(漁港의 種類) 漁港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 第1種漁港 : 利用範圍가 全國的인 漁業의 根據地 第2種漁港 : 利用範圍가 地方的인 漁業의 根據地 第3種漁港 : 漁場의 開發, 漁船의 待避에 必要한 離島 또는 僻地에 所在하는 漁業의 根據地</p> <p>第6條(漁港의 管理) 第1種 및 第3種漁港은 水産廳長이, 第2種漁港은 道知事가 各各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維持 管理하여야 한다.</p> <p>第3條(事業所) ①漁港의 修築事業 및 管理業務를 行하게 하기 爲하여 水産廳長 所屬下에 漁港修築事業所(이하 “事業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前項의 規定에 依한 事業所의 組織과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p> <p>第7條(漁港審議會) ①漁港의 指定과 漁港修築事業에 關하여 水産廳長과 道知事의 諮問에 應하게 하기 爲하여 水産廳과 서울特別市·釜山市 또는 道(이하 “道”라 한다)에 漁港審議會(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②前項의 規定에 依한 審議會의 組織과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p> <p>第4條(漁港의 指定 및 解除) ①水産廳長은 第7條의 規定에 依한 漁港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漁港의 名稱·種類 및 區域을 定하여 漁港을 指定한다. ②水産廳長은 前項의 規定에 依한 審議會의 審議에 앞서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道知事”라 한다)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③水産廳長은 漁港이 事情의 變更 其他 特別한 事由가 發生한 때에는 道知事의 意見과 漁港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指定한 內容을 變更하거나 指定을 解除할 수 있다.</p>	<p>라. 기타 大統領令이 定하는 住民便益施設 마. 위의 各 施設의 敷地</p> <p>4. “漁港施設事業”이라 함은 漁港施設의 新設·增設·改築 및 補修와 浚渫·埋立에 關한 工事を 말한다.</p> <p>第3條(漁港의 종류) 漁港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第1種漁港 : 이용범위가 全國的인 漁港 2. 第2種漁港 : 이용범위가 地方的인 漁港 3. 第3種漁港 : 島嶼·僻地에 所在하여 漁場의 開發, 漁船의 待避에 必要한 漁港</p> <p>第4條(管理廳) 第1種 및 第3種 漁港은 水産廳長이, 第2種 漁港은 直轄市長·道知事가 各各 관리한다.</p> <p>(削 除)</p> <p>第5條(漁港政策審議會) ①漁港의 지정과 漁港施設計劃의 수립등에 關하여 水産廳長·直轄市長·道知事(이하 “管理廳”이라 한다)의 諮問에 應하기 爲하여 管理廳所屬하에 漁港政策審議會(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②審議會의 委員은 漁港에 關한 學識과 經驗이 豊富한 者중에서 水産廳長 또는 直轄市長·道知事가 委屬하며 水産廳所屬하의 審議會의 委員은 15人 이내, 直轄市長·道知事所屬하의 審議會의 委員은 10人 이내로 한다. ③水産廳所屬하의 審議會의 組織과 운영 기타 必要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하고, 直轄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所屬하의 審議會의 組織과 운영 기타 必要한 사항은 當해 直轄市·道의 條例로 定한다.</p> <p>第6條(漁港의 지정·변경 및 解除) ①漁港은 管理廳이 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漁港의 명칭·종류·位置 및 區域을 定하여 지정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한 漁港의 지정에 關하여 必要한 사항은 農林水産部令으로 定한다. ③管理廳은 漁港의 與件이 變하거나 기타 特別한 事由가 發生한 때에는 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第1項의 規定에 依한 지정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정을 解除할 수 있다. ④管理廳은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漁港을 지정·변경 또는 지정을 解除하고자 하는 때에는 審議會의 審議에 앞서 第1種 또</p>

現 行	改 正
<p>④水産廳長은 港灣法の 規定에 의한 指定港을 漁港으로 指定하거나 그 管理機關을 定하고자 할 때에는 關係部處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p> <p>⑤水産廳長이 漁港을 指定, 變更 또는 解除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p>	<p>는 第3種 漁港은 당해 漁港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市·道知事의, 第2種 漁港은 당해 漁港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⑤管理廳은 漁港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區域에 이미 다른 法律에 의하여 土地 또는 水面의 이용에 관한 地區·地域·區域등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p> <p>⑥管理廳이 漁港을 지정·변경 또는 지정을 解除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第 2 章 漁港施設計劃</p>
<p>第8條(施設計劃) ①水産廳長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漁港調査를 實施하고 施設計劃을 作成하여야 한다.</p>	<p>第7條(漁港施設計劃의 수립) ①管理廳은 漁港의 開發을 촉진하고 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基本施設區域, 機能施設區域 및 福利施設區域으로 구분하여 漁港施設計劃(이하 “施設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前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計劃은 이를 基本計劃과 整備計劃으로 區分한다.</p>	<p>②施設計劃은 漁港施設에 관한 綜合적이고 基本的인 基本計劃과 漁港施設의 變更·補修·廢止 또는 移轉 등 整備計劃으로 구분하여 수립한다.</p>
<p>(新 設)</p>	<p>第8條(住民등의 意見聽取) ①管理廳은 施設計劃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審議會의 審議에 앞서 미리 당해 地域의 住民 및 利害關係人의 意見を 들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新 設)</p>	<p>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住民 및 利害關係人의 意見聽取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p>
<p>(新 設)</p>	<p>第9條(施設計劃의 내용) 施設計劃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漁港의 開發 및 운영의 基本方向 2. 漁港施設의 立地·종류·규모 및 配置등 3. 年度別 投資計劃 4. 기타 管理廳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新 設)</p>	<p>第10條(施設計劃의 변경등) ①管理廳은 施設計劃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p> <p>②管理廳은 漁港의 與件이 변한 때에는 施設計劃의 변경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이를 施設計劃의 변경시 반영하여야 한다.</p> <p>③第8條의 規定은 施設計劃의 변경에 이를 準用한다.</p>
<p>(新 設)</p>	<p>第11條(施設計劃수립등의 協議) ①管理廳은 第7條第1項 또는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施設計劃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市·道知事는 第7條第1項 또는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第2</p>

現 行	改 正
<p>第9條(事業施行者) 漁港修築事業은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水産業協同組合이 이를 施行한다. 다만, 第2條第2項第2號 다, 라, 마, 바, 이의 施設은 例外로 한다.</p> <p>第10條(事業計劃書) 地方自治團體, 水産業協同組合 및 前條但書의 規定에 의한 施設者(이하 “事業者”라 한다)가 漁港修築事業을 施行하고자 할 때에는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計劃에 따라 事業計劃書를 作成하여 水産廳長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다만, 第2條第2項第2號아의 施設을 하고자 하는 事業者는 例外로 한다.</p> <p>(新 設)</p> <p>第14條(事業計劃의 變更 및 廢止등) 事業者가 事業計劃書를 變更 또는 廢止하거나 그 施行을 一時 停止하고자 할 때에는 水産廳長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p>	<p>種 漁港의 施設計劃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水産廳長과 協議하여야 한다.</p> <p>③第1項本文의 規定에 의한 協議를 요청받은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協議要請을 받은 날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p> <p>④管理廳은 第7條第1項 또는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施設計劃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p> <p>第 3 章 漁港의 開發</p> <p>第12條(事業施行者) ①漁港施設事業은 民法 또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管理廳이 施行한다.</p> <p>②管理廳이 아닌 자가 漁港施設事業을 施行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業計劃을 수립하여 管理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漁港施設事業을 施行하고자 하는 때에는 管理廳과 協議하여야 한다.</p> <p>③管理廳은 第2項前段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으로 造成 또는 設置된 土地와 施設을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許可할 수 있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漁港施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管理廳은 第2項前段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施行者로 하여금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漁港施設事業에 소요되는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預置하게 할 수 있다.</p> <p>⑤漁港施設事業은 施設計劃에 부합하여야 한다.</p> <p>第13條(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は 第12條第2項前段의 規定에 의한 漁港施設事業의 許可를 받을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禁治產者 또는 限定治產者 2. 破產宣告를 받은 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 또는 승인인 取消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5. 任員중에 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p>第14條(事業計劃의 변경·廢止등) ①第12條第2項前段의 規定에 의하여 漁港施設事業의 許可를 받은 者(이하 “非管理廳”이라 한다)가 同條同項前段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을 변경·廢止하거나 事業施行을 中止하고자 하는 때에는 管理廳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②管理廳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第12條第2項前段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변경 또는 廢止를 명할 수 있다.</p> <p>③第23條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발생한 損失의 補償에</p>

現 行	改 正
<p>第13條(漁港修築事業의 委託) 事業者는 水産廳長의 承認을 얻어 漁港修築事業의 一部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p> <p>(新 設)</p> <p>第11條(事業費의 補助) 水産廳長은 漁港修築事業을 施行하는 事業에 대하여 必要한 때에는 豫算의 範圍안에서 그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p> <p>第15條(承認의 取消) 水産廳長은 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할 때에는 그 事業計劃의 承認을 取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指定期日안에 事業에 着手하지 아니한 때 2. 竣工의 能力이 없다고 認定된 때 3.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命에 違反한 때 <p>(新 設)</p>	<p>관하여 이를 準用한다.</p> <p>第15條(事業代行) ①非管理廳은 漁港施設事業중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業을 他人으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非管理廳은 管理廳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②第13條의 規定은 第1項後段의 規定에 의한 승인의 경우에 이를 準용한다. 이 경우 “許可”는 “승인”으로 본다.</p> <p>第16條(公共團體등의 비용부담) ①管理廳은 漁港施設을 이용하는 등 직접 利害關係가 있는 公共團體로 하여금 漁港施設의 補修 및 관리 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補修 및 관리에 소요되는 費用은 당해 公共團體가 부담한다.</p> <p>②管理廳은 漁港施設事業이 아닌 다른 工事 또는 漁港施設을 損壞 變形시키는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漁港施設事業을 당해 工事 의 施行者 또는 行爲者로 하여금 施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 요되는 經費는 당해 工事의 施行者 또는 行爲者의 부담으로 한다.</p> <p>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共團體의 종류, 補修 및 관리와 負擔하여 야 할 費用의 범위등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17條(事業費의 보조) 水産廳長은 市 道知事가 施行하는 漁港施設 事業중 基本施設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豫 算의 범위안에서 그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第18條(法令 위반등에 대한 처분) ①管理廳은 非管理廳 또는 第15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을 代行하는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 하는 때에는 第12條第2項前段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第15條 第1項後段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取消하거나 事業의 중지 또는 施 設物의 改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및 第2號에 해당하는 때 에는 許可 또는 승인을 取消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第13條第1號 내지 第3號 및 第5號의1에 해당하게 된 때 2. 詐僞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許可 또는 승인을 받은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期日내에 工事を 着手하지 아니한 때 4. 竣工의 能力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5.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命에 위반한 때 <p>②管理廳은 非管理廳 또는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을 代行하는 者가 法人인 경우 第13條第5號(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의 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許可 또는 승 인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任員改任에 필요한 기간을 3月이 상 주어야 한다.</p> <p>③管理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 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처분의 相對方 또는 그 代理人 에게 의견을 陳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相對 方 또는 그 代理人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住 所不明등으로 意見陳述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p> <p>第19條(公益을 위한 처분) ①管理廳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p>

現 行	改 正
<p>第17條(監督·報告) ① 水産廳長은 監督에 必要한 때에는 事業者에게 그 事業의 施行에 관한 事項 또는 報告를 命하거나 資料를 提出하게 할 수 있다.</p> <p>② 水産廳長은 必要한 때에는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事業場, 事業所 등에서 質問하거나, 書類, 簿冊 또는 工事內容을 調査하게 할 수 있다.</p> <p>③ 前項의 規定에 의한 關係公務員은 그 身分을 表示하는 證票을 携帶하고 이를 關係人에게 提示하여야 한다.</p> <p>第16條(土地, 水面 등의 使用) ① 國家 또는 事業者가 漁港의 修築事業의 施行 또는 維持管理를 위하여 他人이 所有 또는 管理하는 土地나 水面 등에 出入하거나 材料의 積載場으로 一時 使用하고자 할 때에는 10日前에 그 所有者 또는 管理者에게 그 뜻을 通知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正當한 使用料를 支給한다.</p> <p>(新 設)</p> <p>②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이 所有 또는 管理하는 土地나 水面의 使用으로 損失이 생긴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正當한 補償을 하여야 한다.</p> <p>第21條(非常災害時의 土地 등의 使用) 水産廳長 또는 道知事는 天災地</p>	<p>에는 第12條第2項前段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第15條第1項後段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取消하거나 事業의 中止 또는 施設物의 改築을 명할 수 있다.</p> <p>1. 漁港의 興件이 變하거나 漁港의 효율적 管理를 위하여 必要한 때</p> <p>2. 公共의 危害를 輕減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必要한 때</p> <p>3. 公共의 이익이 될 事業을 위하여 必要한 때</p> <p>② 第18條第3項 및 第23條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p> <p>第20條(보고·監督) ① 管理廳은 非管理廳 또는 第15條第1項後段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 事業을 施行하는 者에 대하여 당해 事業의 施行에 관한 보고를 命하거나 資料의 제출을 命할 수 있다.</p> <p>② 管理廳은 必要한 때에는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事業場 등에서 關係文書 또는 工事內容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p> <p>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關係公務員은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證票에 관하여 必要한 사항은 農林水産部 令으로 定한다.</p> <p>第21條(土地·水面 등의 出入과 사용 등) ① 管理廳 또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漁港施設事業을 施行하는 者는 漁港施設事業의 施行 또는 漁港의 管理를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他人이 所有 또는 占有하는 土地나 水面 등에 出入하거나 他人이 所有 또는 占有하는 土地나 水面 등을 材料의 積置場, 通路 또는 臨時道路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必要한 경우에는 竹木 기타 障礙物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p> <p>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入을 하고자 하는 者는 그 日時와 場所를 미리 그 土地나 水面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他人의 土地나 水面을 일시 사용하거나 竹木 기타 障礙物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者는 미리 그 所有者 및 占有者에게 통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그 所有者 또는 占有者를 알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해뜨기전과 해진후에는 당해 土地의 占有者의 승낙없이 宅地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 他人의 土地에 出入할 수 없다.</p> <p>④ 제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의 土地나 水面에 出入하고자 하는 者는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⑤ 第20條第4項의 規定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證票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p> <p>第22條(非常災害時의 土地 등의 사용) 管理廳 또는 이 法의 規定에 의</p>

現 行	改 正
<p>變 其他 非常災害로 인하여 漁港管理에 必要한 때에는 他人의 土地, 家屋, 船舶 其他의 工作物을 一時 使用하거나 工作物 其他 障害物을 變更 또는 除去하거나 土石, 竹木, 運搬具 其他 物件을 一時 使用 또는 收用할 수 있다. 이 경우 損失이 생긴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正當한 補償을 하여야 한다.</p> <p>(新 設)</p>	<p>하여 漁港施設事業을 施行하는 者는 第21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天災·地變 기타 非常災害로 인하여 漁港施設事業의 施行 또는 漁港의 管理에 必要한 때에는 他人의 土地·家屋·船舶·土石·竹木·運搬具 및 기타의 工作物을 일시 사용하거나 障礙物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p>
<p>第18條(竣工檢査) 事業者가 漁港修築事業을 竣工한 때에는 遲滯없이 水産廳長의 竣工檢査를 받아야 한다.</p> <p>(新 設)</p>	<p>第23條(損失補償등)①管理廳 또는 이 法에 의하여 漁港施設事業을 施行하는 者는 第21條第1項 또는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損失을 입은 者가 있는 경우에는 그 損失을 입은 者와 協議하여 當해 損失에 대한 補償을 하여야 한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管理廳이 決定한 金額을 損失을 입은 者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損失을 입은 者가 受領을 거부하는 등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管轄 法院에 供託하고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p> <p>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者는 補償金의 지급 또는 供託通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轄 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을 申請할 수 있다.</p>
<p>第18條(竣工檢査) 事業者가 漁港修築事業을 竣工한 때에는 遲滯없이 水産廳長의 竣工檢査를 받아야 한다.</p> <p>(新 設)</p>	<p>第24條(竣工檢査) ①非管理廳이 漁港施設事業을 완료한 때에는 農林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管理廳에 竣工報告書를 제출하여 竣工檢査를 받아야 한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檢査의 申請을 받은 管理廳은 檢査결과 當해 사업이 許可한 내용대로 施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竣工檢査畢證을 교부하여야 한다.</p> <p>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檢査畢證을 교부받기 전에는 當해 사업으로 造成 또는 設置된 土地나 施設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管理廳으로부터 竣工전 사용의 許可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檢査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竣工認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1. 公有水面埋立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竣工認可</p> <p>2. 河川法 第30條의 2第1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認可</p>
<p>(新 設)</p>	<p>第25條(漁港施設의 귀속등) ①非管理廳이 施行한 漁港施設事業으로 인하여 造成 또는 設置된 土地 및 施設은 第1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條件에 따라 竣工과 동시에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귀속된다. 다만, 第12條第3項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漁港施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非管理廳은 第1項本文의 規定에 불구하고 漁港施設事業으로 造成된 土地중 漁港施設用 敷地를 제외한 殘餘土地에 대하여 그가 投資한 總事業費의 범위안에서 所有權을 취득할 수 있다.</p> <p>③管理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귀속된 土地 및 施設에 대하여는 總事業費중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非管理廳이 취득하는 殘餘土地의 價額을 變 金額의 범위안에서 당해 非管理廳에 無償으로 사용·收益하게 할 수 있다. 다만, 水産業</p>

現 行	改 正
<p>第19條(財産의 登記) ①水産廳長 또는 道知事は 施設計劃에 따라 漁港修築事業에서 생긴 土地 또는 工作物을 最終竣工日로부터 1年内에 登記하여야 한다.</p>	<p>協同組合(中央會社를 포함한다) 및 漁村契가 아닌 者에게는 基本施設區域과 機能施設區域을 사용·收益하게 할 수 없다. ④非管理廳에 無償으로 사용·收益하게 할 수 있는 期間은 20年을 超過할 수 없다. ⑤第2項의 規定에 의한 總事業費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非管理廳이 취득하는 殘餘土地 價額의 算定方法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6條(財産의 登記) 管理廳은 漁港施設事業으로 造成또는 設置된 土地 또는 施設중 第25條第1項但書의 規定에 의한 漁港施設을 제외한 土地 또는 施設에 대하여 竣工日로부터 2年이내에 登記하여야 한다.</p>
<p>第22條(漁港臺帳) 水産廳長 또는 道知事は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漁港臺帳을 備置하여야 한다.</p>	<p>第4章 漁港의 관리 및 사용 (削 除)</p>
<p>第23條(漁港施設의 位置變更등) 道知事は 漁港施設의 位置를 變更하거나 賃貸하거나 또는 撤去하고자 하는 때에는 水産廳長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新 設)</p>	<p>(削 除)</p>
<p>(新 設)</p>	<p>第27條(漁港施設 管理規程) 管理廳은 漁港施設의 효율적인 管理를 위하여 農林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漁港施設管理規程을 制定하여야 한다.</p>
<p>(新 設)</p>	<p>第28條(漁港施設의 使用許可등) ①漁港施設을 사용 또는 占有하고자 하는 者는 管理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農林水産部令 또는 直轄市·道의 條例(第2種 漁港에 한한다. 이하 같다)로 정하는 期間과 範圍內에서 漁港施設을 사용 또는 占有하고자 하는 者는 管理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②管理廳이 基本施設區域과 機能施設區域의 漁港施設을 사용 또는 占有의 許可를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益目的에 한하여 許可하여야 한다. ③第1項本文의 規定에 불구하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漁港施設을 사용 또는 占有하고자 하는 때에는 管理廳과 協議하여야 한다. ④管理廳은 第1項本文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함에 있어서 漁港機能保全에 필요한 條件을 붙일 수 있다. ⑤漁港施設의 사용 및 占有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農林水産部令 또는 당해 直轄市·道의 條例로 정한다. 第29條(使用許可등의 取消) ①管理廳은 第28條第1項本文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 또는 占有의 禁止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p>

現 行	改 正
<p>第20條(使用料의 徵收) ①水産廳長은 大統領令으로, 道知事は 該當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하는 바에 의하여 漁港의 利用者로부터 使用料를 徵收할 수 있다.</p> <p>②前項의 規定에 의한 使用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는 國稅滯納處分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例에 의하여 徵收할 수 있다.</p> <p>(新 設)</p> <p>第12條(費用分擔) 漁港施設을 다른 用途에 利用하는 때에는 그 漁港 施設의 管理에 所要되는 費用은 管理機關과 利用者가 協議하여 分擔하게 할 수 있다.</p> <p>(新 設)</p> <p>(新 設)</p> <p>(新 設)</p>	<p>1. 詐爲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를 받은 때</p> <p>2. 第19條第1項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p> <p>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p> <p>②第18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p> <p>第30條(使用料등의 徵收)①水産廳長은 農林水産部令이, 市·道知事는 당해 直轄市·道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第28條의 規定에 의하여 漁港施設을 사용 또는 占有하는 者로부터 使用料 또는 占有料를 徵收할 수 있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使用料 또는 占有料를 減免할 수 있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使用料 또는 占有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는 國稅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이를 徵收할 수 있다.</p> <p>第31條(使用料등의 귀속)第1種 漁港 및 第3種 漁港에 대한 使用料 및 占有料는 國家의 收入으로, 第2種 漁港에 대한 使用料 및 占有料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收入으로 한다.</p> <p>(削 除)</p> <p>第32條(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漁港區域안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漁港施設을 損壞하여 漁港의 機能을 해하는 행위 2. 漁港施設의 構造를 改造하거나 位置를 변경하는 행위 3. 廢船을 放置하는 행위 4. 漁港區域을 埋立하거나 掘鑿하는 행위 5. 漁港區域안에 障礙物을 放置하는 행위 6. 廢棄物을 指定場所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 <p>第33條(原狀回復등)① 管理廳은 漁港機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第32條의 規定을 위반한 者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原狀回復 또는 제거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行政代執行法의 規定에 따라 原狀回復 또는 제거등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p> <p>②管理廳은 第32條의 規定을 위반한 者를 住所不明등의 사유로 알 수 없거나 漁港의 機能保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第1項의 규정에 불구하고 廢船·障礙物·廢棄物의 제거등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p> <p>第5章 補 則</p> <p>第34條(權利·義務의 移轉) 이 법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權利 또는 義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移轉할 수 있다.</p>

現 行	改 正
<p>第26條(權限의 委任) 水産廳長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그 權限의 一部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道知事에게, 道知事는 市長 또는 郡守에게 委任할 수 있다.</p>	<p>第35條(權限의 위임) ①水産廳長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 또는 所屬機關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第24條(協議 등)</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權限을 위임받은 市·道知事는 그 權限의 일부를 水産廳長의 승인을 얻어 市長·郡守·區廳長에게 再委任할 수 있다.</p>
<p>漁港區域안에서 이 法에 規定한 以外의 事業을 하는 때에는 그 事業을 管掌하는 主務官廳은 미리 水産廳長과 協議하여야 한다.</p>	<p>第36條(協議)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漁港區域안에서 公有水面埋立法에 의한 埋立基本計劃을 수립하거나 産業立地 및 開發에 관한 法律에 의하여 工業團地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管理廳과 協議하여야 한다.</p>
<p>(新 設)</p>	<p>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漁港區域안에서 鑛業法·水産業法·公有水面管理法 기타의 法令에 의하여 鑛業權등의 權利를 設定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管理廳과 協議하여야 한다.</p>
	<p>第37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第11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施設計劃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告示한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의 許可·認可·免許·승인·同意 및 協議등(이하 “許可·認可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의 關係法律에 의한 許可·認可등의 告示 또는 公告가 있는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都市計劃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都市計劃事業 實施計劃의 認可 2. 公有水面管理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占用 및 사용의 許可 3. 公有水面埋立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埋立免許 및 同法 第29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設部長官과의 協議 또는 승인 4. 水道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專用水道의 敷設認可 5. 下水道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公共下水道工事의 許可 6. 河川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工事施行許可 및 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의 占用許可 7. 水産業法 第69條의 規定에 의한 工事施行 승인 8. 道路法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工事施行의 許可 및 同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占用의 許可 9. 自然公園法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園占用 및 사용의 許可와 同法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公園管理廳과의 協議 10. 農地의 保全 및 利用에 관한 法律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의 許可 및 同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의 協議·同意 또는 승인 11.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의 規定에 의한 國防部長官 또는 管轄部隊長과의 協議 12. 海軍基地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國防部長官 또는 管轄部隊長과의 協議 13. 軍用航空基地法 第16條 및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國防部長官

現 行	改 正
<p>(新 設)</p> <p>第27條(罰則)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報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偽報告를 한 者 또는 同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關係 公務員의 出入 質問調查를 拒否하거나 妨害 忌避한 者는 5萬圓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p> <p>第28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自然人的 代理人 其</p>	<p>또는 管轄部隊長과의 協議</p> <p>第38條(漁港協會의 設立) ①漁港의 開發을 위한 技術의 발전과 漁港에 관한 調査·研究 및 弘報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漁港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設立한다.</p> <p>②協會는 法人으로 한다.</p> <p>③協會의 定款記載事項과 業務에 關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p> <p>④協會에 關하여 이 法에 規定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第 6 章 罰 則</p> <p>第39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圓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1. 正當한 사유없이 第3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行위를 한 者</p> <p>2. 正當한 사유없이 第3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行위를 한 者</p> <p>第40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700萬圓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1. 第12條第2項前段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漁港施設事業을 施行한 者</p> <p>2.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非常災害시 管理廳의 措置를 正當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p> <p>3. 第28條第1項本文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漁港施設을 사용 또는 占用한 者</p> <p>4. 詐爲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12條第2項前段 또는 第28條第1項本文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p> <p>5. 正當한 사유없이 第32條第3號 내지 第6號의 1의 規定에 의한 금지행위를 한 者로서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原狀回復命令 또는 除去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p> <p>第41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圓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1.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廳의 승인없이 事業計劃을 변경·廢止하거나 事業施行을 중지한 者</p> <p>2.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廳의 처분이나 命命에 위반한 者</p> <p>3.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廳의 命命을 위반한 者</p> <p>4. 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關係公務員의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p> <p>5. 第24條第3項本文의 規定에 위반하여 竣工檢査畢證을 교부받기 전에 土地나 施設을 使用하거나 同條同項但書의 規定에 위반하여 竣工전 使用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사용한 者</p> <p>第42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p>

現 行	改 正
<p>他 使用인이 그 法人 또는 自然人的 業務에 관하여 前條의 規定에 該當하는 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外에 法人 또는 自然人에 대하여도 罰金刑을 科한다.</p> <p>第25條(漁港以外의 港灣) 第4條의 規定에 의한 漁港以外(港灣法에 의한 指定港은 除外한다)의 港灣을 目的으로 修築하는 경우에는 第9條 乃至 第11條 및 第27條의 指定을 準用한다.</p> <p>第29條(準用規定) 漁港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除外하고는 港灣法을 準用한다.</p> <p>第30條(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p>	<p>기타 종업원이 그 法人 또는 個人的 業務에 관하여 第39條 내지 第41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p> <p>(削 除)</p> <p>(削 除)</p> <p>(削 除)</p>
附 則	附 則
<p>①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p> <p>②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에 實施한 漁港調査 및 漁港修築事業은 이 法에 의하여 實施된 것으로 본다.</p> <p>(新 設)</p> <p>(新 設)</p> <p>(新 設)</p> <p>(新 設)</p> <p>(新 設)</p> <p>(新 設)</p>	<p>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p> <p>第2條(施設計劃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수립되거나 施行된 漁港施設計劃 또는 漁港施設事業은 이 法에 의하여 수립 또는 施行된 것으로 본다.</p> <p>第3條(使用許可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公有水面管理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第1種 또는 第3種 漁港안의 公有水面에 대하여 행한 市·道知事의 사용 또는 占用의 許可는 第37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第4條(協會에 관한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당시 民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社團法人 韓國漁港協會(이하 “法人”이라 한다)는 그 總會의 議決을 거쳐 그의 모든 權利 및 義務를 第38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되는 協會가 承繼할 수 있도록 水産廳長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申請할 수 있다.</p> <p>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法人은 이 法에 의한 協會의 設立과 동시에 民法중 法人의 解散 및 清算에 관한 規定에 불구하고 解散된 것으로 보며, 그 法人에 속하고 있던 權利 및 義務는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되는 協會가 承繼한다. 다만, 第38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協會의 定款記載事項을 정하는 大統領令의 施行후 3월이내에 그에 맞도록 定款을 변경하고 기타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第5條(漁港審議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漁港審議會는 이 法에 의한 漁港政策審議會로 본다.</p> <p>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國土利用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第13條의 3第3項중 “漁港法 第4條”를 “漁港法 第6條”로 한다.</p> <p>② 海洋汚染防止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第46條 第1項 중 “漁港法 第6條”를 “漁港法 第4條”로 한다.</p>